



# CIRCULAR

36 Myeongji ocean city 9-ro,  
Gangseo-gu, Busan, 46762  
Republic of Korea

Phone : +82-70-8799-8793  
Fax : +82-70-8799-8419  
E-mail: ywlee@krs.co.kr  
Person in charge : Lee Yong-woo

To : 전 검사원 및 관련업체

No : 2019-12-E  
Date : 2019.12.27

제 목 (Subject)	9.130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 (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적용지침)
적 용 (Application)	2020년 1월 1일 (건조계약일 기준)

1.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제선급연합회(IACS)의 통일해석(UI) MODU3 New가 철회됨에 따라, 2019년 12월 23일에 발행된 회보(No. 2019-10-E, 9.128)의 내용 중에서 다음의 선급기술규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적용일자에 따라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적용지침 : IACS UI MODU3 (New Dec 2018) 반영 철회

2. 아울러, 이 내용은 2020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0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첨부: 선급기술규칙의 개정사항(국/영문)----- 1부. (끝)

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규칙 적용지침 개정(안)

제7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 전기설비

2019. 12.



기 관 규 칙 개 발 팀

2020.01.01.일자 시행사항  
(건조계약일 기준)

- IACS UI MODU3(New) 반영 철회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7 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 전기설비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4 절 전기기기에 대한 비상정지</b></p> <p><b>402. 비상정지 후 계속 작동되는 설비 (2020)</b></p> <p>1. <u>규칙 402.</u>를 적용함에 있어서, 비상정지(ESD) 시스템이 여러 단계로 배치된 경우 폐위구역 이외의 구역에 위치하고 <u>규칙 401.</u>의 1항에 규정된 비상정지 후에도 작동할 수 있는 장비는 구역 “2”에 설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<u>규칙 402.</u>의 요건은 가스 방출과 관련된 모든 ESD 단계에 적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시추작업 중에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(예: 육상전원반, 견인윈치, 윈들러스, 승강전동기 등)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7 장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기관 및 전기설비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4 절 전기기기에 대한 비상정지</b></p> <p><b>402. 비상정지 후 계속 작동되는 설비 (2020)</b></p> <p>1. <del>규칙 402.</del>를 적용함에 있어서, 비상정지(ESD) 시스템이 여러 단계로 배치된 경우 폐위구역 이외의 구역에 위치하고 <del>규칙 401.</del>의 1항에 규정된 비상정지 후에도 작동할 수 있는 장비는 구역 “2”에 설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<u>규칙 402.</u>의 요건은 가스 방출과 관련된 모든 ESD 단계에 적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시추작업 중에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(예: 육상전원반, 견인윈치, 윈들러스, 승강전동기 등)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.</p>	<p>(삭제)</p> <p>- IACS UI MODU3 (New)이 철회됨에 따라, UI MODU3 New에 해당하는 요건을 삭제함.</p>